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설비(제16조제1항 관련)

물질의 구분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1. X류 물질	가. 스트리핑장치 나. 예비세정장치 다. 유해액체물질·선박평형수 등의 배출관장치 라. 수면하 배출장치 마. 통풍세정장치(제12조제1항에 따른 정화방법에 따라 화물창을 정화하는 선박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Y류 물질	가. 스트리핑장치 나. 예비세정장치(응고성물질 또는 고점성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한정한다) 다. 유해액체물질·선박평형수 등의 배출관장치 라. 수면하 배출장치 마. 통풍세정장치
3. Z류 물질	가. 스트리핑장치 나. 유해액체물질·선박평형수 등의 배출관장치 다. 수면하 배출장치 라. 통풍세정장치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잔류물의 배출방법이 별표 5 제8호나목의 배출해역·예비세정방법 및 배출방법에 따른 수면하 배출방법이 요구되지 않는 선박은 수면하 배출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화물창에 선박평형수를 적재하지 않고 수리나 입거 시에만 화물창을 세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와 운항특성을 가지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은 선박의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유해액체물질·선박평형수 등의 배출관장치로만 할 수 있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국내항해에 종사하고 제12조에 따른 배출방법으로 세정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선박의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통풍세정장치 및 유해액체물질·선박평형수 등의 배출관장치로만 할 수 있다.